

(별지 제7호 서식)

담당부서		사후관리물품 수출(일시수출) 승인신청(승인)서					처리기간
담당과장							즉 시
담당자							
연락처							
신청인	상 호						
	대 표 자						
	주 소						
수입신고번호		수입신고수리일	통관지세관명	적용법조항	사업의종류		
현설치(사용)장소							
수출(반출)국명		수출예정세관명	수입예정세관명	재반입예정일	종결예정일		
*수출(일시수출)이유							
사 후 관 리 물 품 명 세							
HS번호	품명	규격	수량	과세가격	관세감면(분납)액	내국세감면액	비고
수출(일시수출)물품 명세							
HS번호	품명	규격	수량	과세가격	감면(분납)해당액	비고	
<p>「관세법」 제108조제4항 및 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수출(일시수출) 하고자(하였음을)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right;">20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○○ 세 관 장 귀하</p>				<p>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수출(일시수출) 신청을 승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right;">20 년 월 일 ○○ 세 관 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right;">귀하</p>			
* 구비서류 :						수수료	
1. 신청서 1부.						없 음	

* **유의사항** : 사후관리물품을 수출 또는 일시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(관할지 세관에서 수출승인을 얻은 후 통관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야 함)얻어야 함. 일시수출승인을 받은 물품이 재수입되어 관세 감면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